

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5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5. 9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5. 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5. 22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립)

가. 개정이유

-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시책을 추진하고, 상수도 개전 수용가에게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 요금 부과 근거 마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“구경별 기본요금”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2) 개전 수용가 구경별 요금 부과 조항 신설(안 제26조)
- 3) 요금 감면대상 중복적용 제외 일부개정(안 제37조)
- 4)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(안 제37조)
 - 감면대상에 “다자녀세대” 및 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정” 추가
- 5)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수 예고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, 통지방식 규정 신설(안 제4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수도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2) 예산조치: 요금감액 보전(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)

3) 합 의: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자체개선안 동의 [복지지원과-12296(2025. 3. 28.)호]

4) 기타사항

- 입법예고: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-21호
 . 예고기간: 2025. 3. 24. ~ 4. 13.(20일간)
 .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, 급수 중지 등의 급수전에 대해 구경별 요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2조) 정의
 - 안 제9호를 신설하여 구경별 기본요금의 의미를 규정함.
- (안 제26조) 요금
 - 안 제2항은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한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.
- (안 제37조) 요금 등의 감면대상
 - 안 제1항은 가구분할로 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 감면 혜택을 금지한 단서를 삭제하고, 요금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(동일 내용을 규정한 현행 제2항은 삭제)하고, 안 제14호 ~ 15호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세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정을 각각 신설(추가)함.

- (안 제40조) 정수처분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단수 예고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통지방식 규정을 신설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수도감면 대상 확대 및 급수중지 기간 중 요금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5. 22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